

국민 목소리에 응답한 고용노동 규제혁신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5월 30일 범정부 규제혁신 1년을 맞아 국민, 기업 및 협·단체 등 60여 명이 참석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년간 207개 개선과제를 발굴, 133개를 개선완료(64%)하였다고 밝혔다.

국민이 말하는 분야별 현장 변화 사례로는,

①김치공장 사업주는 20년만에 대폭 개편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도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면서 반겼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인원 한도도 느는 등 현장의 오랜 요구사항이 반영되었다고 평가했다.

②반도체 기업은 방유제(턱) 적용대상 명확화로 설치 비용 약 125억원을 절감했고,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같은 설비라면 중복적 자료제출 부담을 없애 작업 효율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화약기업에서도 30년만에 전자 발파 등 최신 기술에 대한 안전기준이 마련돼 폭발재해 감소를 기대했다.

③중소기업 직업훈련 담당자는 그간 개별 훈련과정별로 승인받아야 했는데 이제는 연 1회 훈련계획을 제출하면 훈련을 개설하고, 이수율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훈련참여 근로자는 훈련과정의 80% 이상을 무조건 수강해야 했는데,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 수강하고, 10분 이내 짧은 과정(숏폼컨텐츠)도 훈련으로 인정되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호평했다.

④장애인 근로자는 보조공학기기 신청을 사업주뿐 아니라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원하는 기기 선택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권기섭 차관은 “규제혁신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라면서, “국민 눈높이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점들을 세심히 살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라고 약속했다.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태연 (044-202-7064)
		담당자	사무관 주무관	김보경 (044-202-7061) 이민정 (044-202-7062)

붙임 1

고용·노동 규제혁신 성과보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23.5.30.(화) 14:30~16:10(100분) / KT&G 상상플래닛(서울 성수동 소재)

□ 참석자

- (정부) 고용노동부 차관, 정책기획관, 국제협력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산재예방감독정책관 등
- (국민) 고용서비스 참여 국민, 사업주, 직업훈련 참여 기업 및 근로자, 삼성전자, 한화, 중기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반도체산업협회 등
- (산하 기관) 산업안전공단, 산업인력공단, 장애인공단, 고용정보원
- (전문가) 이규용(노동연), 이수경(직능원), 박종일(서울과기대)

□ 주요 내용 ※ 인사말씀까지 공개

- 규제혁신 추진현황 보고 및 규제개선에 따른 현장 변화 사례 공유

시간	주요내용	비 고
14:30~14:35	5' • 기념 촬영	-
14:35~14:40	5' • 인사말씀	차관
14:40~14:50	10' • 고용·노동 규제혁신 추진현황	규제개혁 법무담당관
14:50~15:45	55' • 현장 변화 발표 및 과제 건의 • 과제별 답변	국민·기업 등 담당 국장
15:45~16:00	15' • 전문가 평가	전문가
16:00~16:10	10' • 종합토론 및 마무리	차관

① 기업 직업훈련 자율성 확대(자체훈련 탄력운영제 사업 운영, ‘22.7월~)

↳ **현장목소리** “중소기업이 4시간 이상 훈련하는 것은 부담인데, 기업 여건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최소 교육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훈련비도 훈련시간에 따라 지원되니, 올해 1년 교육 과정 70%가 진행되고 이수율이 98%로 높아졌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승인 절차	• 개별 훈련과정별 승인·인정	• 연간 훈련계획 1회 수립·제출 * 개별 훈련과정별 승인 불필요
지원기준	• 80% 이수 시 지원(수료인원에 따라)	• 훈련 시간에 따라 지원(80% 이수 시 전액)
최소시간	• 과정당 4시간 이상	• 폐지

② 근로자 훈련과정 선택권 강화(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사업 운영, ‘22.7월~)

↳ **현장목소리** “직무관련 훈련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여러 분야의 교육을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고, 숏 형태의 콘텐츠도 인정되어 출퇴근 시간을 활용하기 좋아요”

구분	이 전	개 선
수강 방법	• 기업과 훈련기관이 사전에 정한 훈련과정만 수강 가능 • 과정 내 강의 강제 수강(80% 이상)	• 기업과 훈련기관이 다양한 훈련과정 계약, 근로자가 필요한 과정 선택 • 과정 내 필요한 부분만 발취 수강
훈련비	• 훈련시간별 단가	• 인당 14만원
콘텐츠 요건	• 숏폼 콘텐츠 수강 불가 • 훈련과정당 최소 4시간 이상	• 숏폼 콘텐츠 수강 가능 • 마이크로러닝 과정(4시간 이하) 가능

③ 장애인 근로자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고시개정, ‘22.7.12.)

↳ **현장목소리** “사업주가 아닌 제가 직접 기기 지원을 신청하게 되어 처리 속도가 빨라 졌고, 공단 소유의 기기를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용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제가 원하는 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기기 신청 주체	•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차량용 기기 한정)	•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모든 기기)
지원 한도	• 1인당 1,000만원, 중증 1,500만원	• 1인당 1,500만원, 중증 2,000만원
지원 방식	• 공단 소유 기기로 지원	• 기기 구입 및 대여 비용 지원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확대(고용정책심의회 의결, '22.12월)

↳ **현장목소리** “갑자기 아이 셋을 혼자 양육하게 되어 일을 해야만 했는데, 경력단절이 길어 바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구직촉진수당 외에 부양가족수당까지 추가로 지급되어 생계 부담을 덜었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수당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유형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직촉진수당 외 부양가족수당* 지급 * 부양가족(만 18세 이하, 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1인당 월 10만원 최대 월 40만원

⑥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개편(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

↳ **현장목소리** “김치 공장은 작업이 힘들어서 내국인은 오려고 하지 않아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오래 일할 사람이 필요한데 올해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들어오고 사업장별로 고용할 수 있는 인원도 많아져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사업장별 총 고용 허용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인원 제한 * 예: 제조업 5~40명, 농축산업 5~2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1~5명 추가 고용 허용('22.8.31.)
쿼터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5~6만명 수준으로 결정 * '19년 56천명 → '20년 56천명 → '21년 52천명 → '22년 69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11만명 역대 최대 결정('22.10.25.)
신규 고용허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로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고용허가서 발급 한도 폐지('23.1.1.)

* 신규 고용허가서: 해당 연도에 외국인력을 고용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를 신규로 발급 받을 수 있는 한도

⑥ 안전한 발파 작업 기준 제시(발파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정, '23.6월)

↳ **현장목소리** “발파작업지침이 30년간 개정되지 않아 기술 및 산업구조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는데, 지침 개정으로 안전한 발파 작업의 기준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발파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도화선 발파 작업 기준 규정 비전기 발파 작업 기준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화선 발파 기준 삭제 현장에서 사용하는 비전기·전자 발파 작업 시 안전 기준 신설
관계 법령 정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가 불분명한 화공작업소 등의 용어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파 작업이 없는 '화약류저장소' 기준은 총포화약법 준용

⑦ 반도체 업종 남은 규제 개선

↳ **현장목소리** “51만개 현장에 종이로 게시하던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키오스크로 대체 할 수 있어 관리효율성이 높아졌고, 방유제(턱) 설치 대상 합리화로 125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구분	이 전	개 선
화학물질 관리요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화학물질 취급 시 숙지해야 할 행동 요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리요령을 종이로만 게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이 외에 키오스크, 태블릿 PC 등 전산장비로도 게시 가능(22.9.16.)
방유제(턱)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위험·유독 물질 유출 방지를 위해 제조·생산설비에 부착된 중간탱크에도 방유제(턱) 설치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간탱크 주변에 트렌치 설치로 방호 조치 된 경우 방유제(턱) 미 설치 가능(22.7월) 
공정안전 관리제도 (P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가 늘어나는 전기정격용량 총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완료 설비와 같은 제조사, 같은 모델, 같은 종류 이내 물질 취급 시 추가 제출 생략(23.5월)
도급 승인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위험 작업 도급 시 도급승인을 받아야 하고, 동일한 작업에 동종 설비 추가·이동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해 신규* 도급 승인 절차 필요 * 지정된 평가기관을 통한 안전보건 평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승인받은 도급 건 내 동일한 작업 방법 내에서 동종설비 추가·이동 하는 경우 신규 도급승인이 아닌 변경* 승인 허용(22.9.22.) * 안전보건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변경 되는 자료만 제출